

요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방안

□ 개 요

○ (적용기간) 2020. 12. 29.(화) 0시 ~ 2021. 1. 3.(일) 24시 [6일간 연장]

※ 수도권(2.5단계)과 비수도권(2단계) 조치가 12. 28.(월)에 종료됨에 따라
現 거리두기 단계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1.3.) 기간에 맞추어 6일간 연장

○ (주요내용)

- 현재 연말연시 특별대책에 따라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하여 총력 전개 중
 - 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② 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③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④ 스키장 집합금지, ⑤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⑥ 관광명소 폐쇄 등
- 식당·카페 등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수칙은 **보완·개선**하여 적용(전국)
 - ※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브런치카페 등과 같이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무인카페도 매장 내 착석 금지(참고 1)

□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

-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
- **구상권 청구**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산 시

※ (개편) 단계별 추진경과

- ▲(1단계) 2020. 11. 7. ~ 별도 해제 시
- ▲(1.5단계) 2020. 11. 23. ~ 12. 6. ▲식당·카페 조기사행(11. 21~12. 6) ▲ 1.5단계 격상 제외(강화군·웅진군)
- ▲(2단계) 2020. 11. 24. ~ 12. 7. (2주간)
- ▲(2.5단계) 2020. 12. 8. ~ 12. 28. (3주간)
 - (추가 1) 겨울 스포츠시설 일반관리시설 지정 및 2.5단계 : 12. 11.(금) 0시 ~ 12. 28.(월) 24시
 - (추가 2) 인천시 방역강화 조치 : 12. 13.(일) ~ 별도 해제 시
 - (추가 3) 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등 추가 : 12. 19.(토) 0시 ~ 12. 28.(월) 24시
 - (추가 4)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12. 24.(목) 0시 ~ 1. 3.(일) 24시

□ 수도권 2.5단계 연장 방역조치(요약표)

※ 청서 볼드체(밑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 각 유형별 세부지침(참고 1 ~ 12)

구 분	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 + 2.5단계 연장*) * 2020. 12. 29.(화) 0시 ~ 2021. 1. 3.(일) 24시 [6일간 연장]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식당 (참고 1) 추가 도입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p. 7 ~ 9)	▶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응 음식류(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파스타, 오믈렛 등)를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점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구 분	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 + 2.5단계 연장*) * 2020. 12. 29.(화) 0시 ~ 2021. 1. 3.(일) 24시 [6일간 연장]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아·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구 분	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 + 2.5단계 연장*) * 2020. 12. 29.(화) 0시 ~ 2021. 1. 3.(일) 24시 [6일간 연장]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숙박시설	▶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제한 <인천시 조정> - 월미바다열차 운행중단 (2020. 12. 13. ~ 별도 해제 시) - 인천대공원 · 월미공원 폐쇄 (2020. 11. 24. ~ 별도 해제 시)
해맞이 · 해님이 주요 관광명소	▶ 최대한 폐쇄
사회복지이용시설	<정부방침>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 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에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인천시 조정> -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 설정 ※ 단,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 등은 필수 제공 조치
취약시설	▶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 등 방역관리 철저

구 분		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 + 2.5단계 연장*) * 2020. 12. 29.(화) 0시 ~ 2021. 1. 3.(일) 24시 [6일간 연장]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인천시 조정] - 인천도시설도 1·2호선 30% 감속운행(2020. 12. 8. ~ 별도 해제 시)	
모임·행사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인천시 조정] -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2020. 11. 23. ~ 별도 해제 시)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합금지(2020. 11. 24. ~ 별도 해제 시) - 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2020. 12. 23. ~ 2021. 1. 3.)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정부방침]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인천시 조정] ▶ 인천시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 대상자 1/2 의무시행(12. 25. ~ 별도 해제 시) * 대상자 : 현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 소방업무, 필수요원 등 제외	

□ 우리 시 행정조치 현황

현행유지	1)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6.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1. / (시행) 2020. 10. 12. - (과태료) 운송사업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2)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 (과태료 처분 시행기간) 2020. 11. 13. 0시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0. 15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2. / (시행) 2020. 10. 13. / (과태료) 10만원 이하 ※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 (적용기간) 2020. 10. 14.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1. 12. 24시 / (과태료 시행) 2020. 11. 13. 0시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없이 되는 집회 - (적용기간) 2020. 11. 24. 0시 ~ 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4. 0시 ~ 10. 11. 24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10. 13. 0시 ~ 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4) 인천도시설도 심의기간(21시~01시) 30% 감속운행 - (적용기간) 2020. 12. 8. ~ 별도 해제 시 5)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우리 시 방역조치 강화 (2.5단계) ① 월미바다열차 운행중단(2020. 12. 13~ 별도 해제 시) ② 인천대공원·월미공원 폐쇄(2020. 12. 15. ~ 별도 해제 시) ③ 인천시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 대상자 1/2 의무시행(2020. 12. 15. ~ 별도 해제 시) ④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강력 권고(2020. 11. 23. ~ 별도 해제 시) ※ 유·초·중·고 원격수업 전환(교육청 2020. 12. 15. ~ 별도 안내 시) 6) 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12. 23(수) 0시 ~ 2021. 1. 3(일) 24시 / (벌금) 주최자 및 참여자 300만원 이하 - (적용예외) 공적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시험(분할된 공간 50인 미만) / 결혼식 및 장례식(2.5단계 적용, 50인 미만) / 기타 일상적 가정생활(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 등
조치해제	※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해제 2020. 9. 14. 0시 - (과태료) 2020. 9. 3. 0시 ~ 9. 13. 24시

□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현황

구 분	대 상 시 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홍보관, 식당·카페 ※ 다만 식당·카페 12. 7.부터 과태료 부과 ▶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출입명부 의무화 (전자 또는 수기명부 선택)	▶ 일반관리시설(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겨울 스포츠시설 ▶ 종교시설 ※ 일반관리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출입명부 의무 시설 제외

참고 1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추가 보완 12.28)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원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공통 적용 방역수칙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7 -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제(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대장작성)	▶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대용·음식류*를 판매하나,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금지에서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 이상)	▶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에서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공용 집계·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8 -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섭취하는 경우 한해 매장 내 취식 가능 - 다만 가급적 1시간 이내 섭취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참고 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관련 FAQ

Q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식당, 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Q2.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Q3.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좌석/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
- 예를 들어, 룸(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Q4. 식당·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건가요?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됨

참고 3 수도권 백화점 등 방역지침 의무화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온라인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 마스크 착용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참고 4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참고 5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참고 6

학원 등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①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시설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평생교육기관**(문화센터 등)

관리자·운영자 수칙
▶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시설은 제외

참고 7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결혼식장, 장례식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개별 결혼식·장례식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영화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 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공연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PC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제,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제,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오락실·멀티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제,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제,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직업훈련기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제,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제,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이·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제,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제,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독서실·스터디카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사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사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놀이공원·워터파크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사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사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중합소매업**(300㎡ 이상)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온라인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 시식 코너 운영 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참고 8 집합·모임·행사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

※ (별도 시행) 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2020.12.23.~2021.1.3.) p.6 참조

< 집합·모임·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50명 미만 기준 미적용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참고 9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콜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 유통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참고 10 수도권 대중교통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이용자 수칙

- ▶ 마스크 착용
-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참고 11 체육시설 종류

□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별표 1)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 풋볼장, 물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위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대상 시설 추가 가능

□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예시

구분	세부사항	근거
체력단련장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GX도 포함)	시행령, 유권해석
체육도장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주짓수, 해동검도, 태권, 특공무술 등 모든 체육도장 포함	시행령
무도장·무도학원		시행령
당구장		시행령
가상체험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양궁장 등	시행령
골프연습장	실내 골프연습장	시행령
체조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시행령
수영장		시행령
볼링장		시행령
롤러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시행령
탁구장		시행령
테니스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	시행령
배드민턴장	실내 배드민턴장	시행령
종합체육시설		시행령
빙상장		시행령
실내 축구장	실내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축구클럽 등	시행령, 유권해석
인공암벽장	실내 클라이밍 등	유권해석
체육교습업	축구교실(클럽), 야구교실(클럽), 농구교실(클럽) 등	체육시설법

참고 12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관련 Q&A

1 공통사항

Q1. 연말연시 방역강화 적용지역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환자가 증가 추세인 점과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의 특성상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
- 성탄절·연말·연시를 고려하여,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시행

Q2. 행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파티룸,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위반 시,
 - 시설주에 대해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종교시설, 식당, 영화관·공연장, 백화점·대형마트,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위반 시,
 - 시설주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며,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가능
- * 운영 중단 명령은 법 시행일에 따라 12.30일부터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2 식당 관련

Q1. 식당에서는 모두 최대 4인까지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가족 등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기업경영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5인 이상이라도 식당 이용 가능하며, 그 외에는 최대 4인까지만 가능
- 다만, 이용 시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 회사 구내 식당에도 적용되나요?

- 구내식당, 건설현장 구내식당 등*의 경우 식당 5인 이상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 * 회사에서 근처 음식점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들이 식사하는 식당 포함
- 다만, 이용 시에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함

Q3. 뷔페도 적용되나요? 결혼식장 내 뷔페도 해당되나요?

- 뷔페도 일반식당과 동일하게 최대 4인까지 예약 가능하며,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기업경영활동을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 다만, 기존수칙과 같이 뷔페의 경우 식당 방역수칙 및 ①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②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결혼식장 내 뷔페는 결혼식장 방역수칙*에 따름
- * 2.5단계 50인 이내, 2단계의 경우 100인 이내로 인원 제한,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서로 겹치지 않는 경우 공간별로 각 50인/100인 이내로 제한

3 파티룸 관련

Q1. 파티룸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파티룸’이라는 명칭이 아니어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 파티룸이란 각종 파티*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을 의미함
- 등록된 업종(자유업, 공간임대업 등) 또는 명칭과 상관없이 집합금지 적용
 - * 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 ** ‘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 숙박시설의 경우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 등) 운영 금지

4 영화관·공연장 관련

Q1. 현재(12.8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 방역수칙이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이 방역수칙으로 통합되는 건가요?

-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 영화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제),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 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제),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공연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제),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제),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6 백화점·대형마트 관련

Q1. 백화점·대형마트에 이용객 휴식공간은 무엇을 말하나요 ?

- 이용객 휴식공간이란 휴게실(멤버십 라운지 등) 또는 시설 내 유휴 공간에 의자 등을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 등을 의미함

Q2. 이용 금지되는 휴식공간에 수유실도 포함되나요 ?

- 유아 기저귀 교체, 모유·분유 수유 등 영유아 돌봄을 위한 공간은 이용가능함
- 다만, 수유실 등 영유아 휴식공간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시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3. 건본품 사용을 금지하였는데, 건본품에는 화장품이나 옷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이용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어 금지됨. 다만 옷의 경우는 시음·시식과는 달리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착용이 가능하여 건본품 사용이 가능함
- 단, 옷 등 기타 건본품을 착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7 겨울스포츠시설 관련

Q1.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이 집합금지될 경우 시설 관리를 위한 직원도 들어갈 수 없나요?

- 집합금지란 시설 내에 이용자들이 모여서 머무르지 않는 것으로, 시설 관리자의 경우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 출입 가능

8 숙박시설 관련

Q1. 숙박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숙박시설에는 관광진흥법 상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농어촌 민박업소, 외국인도시민박업소 등이 해당함
- 호텔, 리조트, 콘도, 게스트하우스, 모텔, 여관, 여인숙, 민박, 펜션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 중인 모든 숙박시설을 의미

Q2. 객실 내 정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추가 비용을 내고 숙박할 수 있는 인원(최대 수용가능 인원)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수용인원이 아닌' 숙박시설에서 해당 객실에 대해 적정인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정원(기준인원 등)만을 의미함
- 연말연시 '집에 머물기' 취지이므로, 비용 지불시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숙박할 수 없음

Q3.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조치 기간 중 모든 숙박시설은 보유 객실의 50% 이내로 운영(객실 판매율 50% 이내)하여야 함을 의미
- 사전예약, 당일 투숙과 관계없이 객실의 50% 이내로 투숙객을 받아야 함

Q4. 이미 객실의 50% 이상이 예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예약 취소를 진행하여 50% 이내로 객실을 운영하여야 함

Q5. 조치 시행일(24일) 이전부터 숙박시설에 숙박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미 숙박하고 있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숙박을 허용하되, 다만 객실의 50% 이상을 이미 숙박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예약 불가
- * 외국인 승무원 숙박을 위해 항공사와 숙박시설 간 사전협약을 이미 맺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숙박 허용

Q6. 정원에 미성년자 자녀도 포함하나요?

- 정원 산정 방법은 숙박시설의 규정에 따름

9 관광명소 관련

Q1. 관광명소는 어디인가요 ?

- 주요 관광명소는 지자체가 판단하여 정함

Q2.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은 모두 폐쇄하여야 하나요? 국립공원 휴양림이나 캠핑장 등도 다 폐쇄하여야 하나요?

- 지자체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최대한 폐쇄조치를 하는 사항이므로, 국립공원 내 휴양림, 캠핑장 등도 이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함

Q3. 주요 관광명소 폐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해돋이 관광명소도 일괄 1월3일까지 폐쇄인가요?

- 해돋이·해넘이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의 폐쇄는 각 관할 지자체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기간 등을 정할 수 있음